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8.7.3(화) 조간	배포	2018.7.2.(월)
책 임 자	금융정보분석원 상호평가대응팀장 이 귀 응(02-2100-1740)	담 당 자	김지웅 사무관 (2100-1725) 유미리 사무관 (2100-1737) 이새미 사무관 (2100-1735) 김민수 사무관 (2100-1788)	

제목: 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(FATF) 총회 결과

◇ 금융정보분석원 (원장:김근익)은 외교·법무, 검찰·국세·관세·금감원과 함께 제29기 제3차 FATF 총회(프랑스 파리에서 열림)에 참석

◇ 주요 논의 주제

①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/테러자금조달 대응방안 논의

– 가상통화를 “Virtual Currencies/Crypto-Assets”로 표현하기로 결정

② FATF TREIN (부산소재)의 업무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

–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, 특히 신규 교육과정에 관심을 보임

③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보고서 (Report to G20, '18.7)를 채택

– FATF의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명시

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

⑤ 회원국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

I. FATF* 총회 참석 개요

* '89년 설립. 미·중·일·호주 등 37개 정회원,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, IMF·WB·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(policy-making body) (한국은 '09.10월 정회원 가입)

□ 일시/장소 : 2018.6.24.(일) ~ 6.29.(금), 프랑스 파리

□ 참 석 자 : 금융정보분석원장 (한국 대표), 외교부, 법무부, 국세청, 관세청, 금감원 등

II. 회의 결과 주요 내용

1.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

- FATF는 적절한 하나의 용어가 결정될 때까지는 가상통화를 “Virtual Currencies/Crypto-Assets”로 두 용어를 병기하여 쓰기로 결정
-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, 권고기준과 가이드언스의 개정(안)을 마련하기로 함
 -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핀테크포럼* (18.9월, 중국)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
 - * FATF는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

2.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

- '18년 2월 총회 이후 업무실적 및 향후 FATF TREIN 교육계획, 테러자금 관련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을 보고
 -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, 특히 신규 교육과정*과 초급 수준의 온라인 교육 개발에 관심을 보임
 - * ① 테러자금조달금지(CFT) 관련 교육 개발 착수 예정, ② 확산금융(PF) 관련 교육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

3. G20*에 제출할 보고서 채택

* G20 재무장관회의는 FATF에 가상통화관련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(18.3월)한 바 있음

- FATF는 가상통화관련, 그 간의 활동*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
 - * 각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조사, 가상통화관련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
 - 특히, 가상통화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드언스 개정 등을 미국 의장국 기간 (18.7월~19.6월)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
- 그 밖에 확산금융, 테러자금조달 방지, 핀테크·레그테크 등에 관한 FATF 업무성과*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할 예정
 - * 정밀금융제재이행 등 확산금융(PF) 방지를 위한 FATF 가이드언스 개정 등

4.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

-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, 미이행·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
 -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(Counter-measure)를,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(Enhanced due diligence)를 유지
 -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(Compliance document)으로 분류됨
 - 이라크,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되어 주의 국가 명단(Compliance document)에서 삭제되었음

< FATF 공식 성명서 >

종류		효과	국가
① Public Statement	Counter-measure	사실상 거래중단,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	북한
	Enhanced due diligence	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	이란
② Compliance document		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(High risk and other monitored jurisdictions)	예멘 등 8개국*

* 에티오피아, 스리랑카, 시리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튀니지, 파키스탄, 세르비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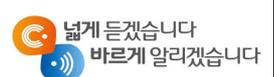
5.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

- 이번 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, 바레인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, 호주, 브라질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*을 점검
 - *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
 - 특히, 브라질이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을 미이행 (테러관련 정밀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)할 경우, '19.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 prfsc@korea.kr



참고

FATF (Financial Action Task Force) 개요

□ 설립 목적

- UN 협약*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(Financial Action)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(Task Force)로서 '89년 설립

* 비엔나 협약('88, 마약),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('99), 팔레르모 협약('00, 조직범죄), 메리다 협약('03, 부패) 등

- 마약자금('89)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('96), 테러자금조달('01),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('12)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

□ 주요 기능

-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,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
-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
-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, 대응 수단 개발 등

□ 운영 방식

- 총회(Plenary), 운영위원회(Steering Group), 5개 실무그룹(Working Group)으로 운영되며,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



□ 회원 구성

- 정회원(35국+2기구), 준회원(9개 지역기구), 옵저버로 구성
 -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(FATF Style Regional Body)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*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
- 우리나라는 '98년 아태지역기구*(APG), '09년 FATF 정회원 가입
 - * 41개 회원국 및 37개 옵저버(9개국 + APEC·ADB 등 28개 국제기구)